

2024 호반혁신기술공모전

공모 요약서 양식

기업명 : 00000000



기업명				소재지(본사/공장)			
제안 과제명							
공모분야	Step 1	스마트시티()	숙박/레저/유통()	제조()	신사업()		
	Step 2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건설로봇() - AI기반 건설신기술 적용 로봇(콘크리트 미장, 도장, 균열탐지 등) ■ 건설혁신() - AI/VR, 모듈러/OSC건축, 소음저감 등 콘테크(Con-Tech) 관련 기술 및 제품 ■ 에너지 신기술() - 에너지 통합관리, 히트펌프, 단/차열, 연료전지, 수소 ■ 건설자재() - 친환경(저탄소,순환자재 등), 고품질/혁신자재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AI 수요예측() - 원자재수요예측, 리조트 객실단가 예측 등 ■ 스마트골프장() - AI기반 코스/조경관리, 플레이어 분석, 시설물 인력운영 통합관제 등 ■ 자원순환() - 폐기물 분리/배출, 자원 재활용/재순환 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스마트공장() - 검사/생산 자동화, 설비/센싱 자동화, 에너지절감 ■ 신재생에너지() - 태양광/풍력발전 적용기술, 발전모듈, 전기차충전시스템 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농업기술() - 스마트팜, 대체식량 등 AI접목기술 등 ■ 기타() - 신사업 제안이 가능한 모든 분야 		
	기타	기타의 경우, 상세분야 기재					
기업 분류	창업기업() 예비창업자() 연구기관()			설립연월			
직원 수				사업자등록번호			
제안기술 단계	공동개발 필요() / 즉시 적용()			대표자	성명		
투자유치금액	(누적) 총 백만원				E-mail		
신청예산					연락처		

Step #1~#2 은
단계별 1개만 선택
(기타 : 상세분야 기재)
※ 중복 지원 불가

기술개발 배경 (문제점)	
기술개발 목표	
BM/솔루션 소개	
호반그룹 협업내용 /기대효과	
국내/외 목표시장	
소요예산	
소요기간	

① 특허,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
②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시행령 제4조(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)의 업종으로 동 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자(기업)

* 지원제외 업종 : 일반유흥주점업, 무도유흥주점업,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

**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(통계청, kssc.kostat.go.kr) 참고

③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(기업)

* 단, 신청 접수 마감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(기업),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,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,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, 회생인가를 받은 자(기업)는 신청 가능

④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(기업)

* 단, 세금 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(체납처분유예신청), 신청 접수 마감까지 국세,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(기업)는 신청 가능

** 단,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(기업) 중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(기업),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·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(기업)는 신청 가능

⑤ 선정일(추천일) 기준 현재 휴업 중인 기업

⑥ 전담기관이 지정한 은행계좌(사업비 계좌) 개설 및 거래가 불가능한 자(기업)

* 「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2 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,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·등록이 되지 않은 자(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, 가상화폐 거래소업, 가상화폐 개발업,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)

⑦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임금 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

⑧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정거래행위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기업과 그 임원

⑨ 기타 중소기업부 장관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